제9회 규제합리화위원회
성장분과위 회의록

2026. 8. 14.

국 무 조 정 실
규 제 조 정 실

Ⅰ. 회의개요

○ 일　시 : ’26. 8. 14. (금) 14:00 ~ 17:00

○ 출석위원(12명)

- 민간위원 : 남궁범 분과위원장(주재), 강영철, 김춘순, 박민수, 박익수, 이세영, 이종원, 전창대, 조원동, 최원석

- 정부위원 : 국조실, 법제처

Ⅱ. 상정안건

구분	의안번호	상정기관	의 안 명	구 분
①	2026-233	관세청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의결안건

Ⅲ. 회의 결과

1. (의결)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관세청)

□ 개 요

소관 부처	관세청
규제 사무명	□ 협력인정업체 등록요건·관리 및 인증번호의 검증·재검증
위원회 결정 내용	**1 이중인증 도입의 필요성 및 적정성**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중인증 도입을 통해 사전적으로 피해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함께 도입되는 **협력인정업체의 통관상 특례**를 통해 **구매자의 규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중인증 제도는 도입하되,** **2 거래정보 제출수준의 적정성** ○ **필수 제출항목**은 **통관관리에 필요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선택항목**은 **미제출**하더라도 업체에 **별도의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동 고시 개정안에 대해 원안동의 ○ 시스템 오류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전자상거래 업자가 **지속적으로 준수 가능한 수준**의 **거래정보 제출률**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 바, **제출률 기준을 일부 완화할 것**을 개선권고

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의 적정성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등록요건으로 규정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고발 조치**만으로 결격사유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는 바, **과징금 부과 처분** 또는 **벌금형 이상이 선고**된 경우에 한해 **결격사유를 적용**할 것을 개선권고

○ **제도의 안정적 정착, 전자상거래업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구매자 편의 보장**을 위해 **동 등록요건의 적용시기를 '위반행위 발생일'을 기준으로 적용례를 마련**할 것을 개선권고

4 제도 시행관련 홍보 강화

○ **이중인증** 및 **협력인정업체** 제도의 **원활한 정착·시행**을 위해 **구매자 및 전자상거래업자**를 대상으로 제도의 주요내용 등을 **적극 홍보**하고, 보다 간편한 이중인증 방법을 강구할 것을 부대권고

5 재검토기한

○ 운영성과 및 사업자 부담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어, **재검토 기한을 2년으로 설정**할 것을 개선권고

□ 논의 내용

(1)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 (이해관계자) 협력인정업체 등록요건 중 거래정보 제출률 기준과 관련하여, 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거래정보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제출률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기준 완화가 필요

- 거래정보 제출항목이 총 63개로 과다하고, 일부는 통관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정보도 포함되어 있어 업체의 정보제출 부담 과도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또는 고발된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한 요건을 삭제하거나, 통관업무와 직접 관련된 위반행위로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고시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하는 경과조치 마련 필요

-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고발 사실만으로 협력인정업체 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함

○ (○○○ 위원) 협력인정업체로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업체는 공정한 경쟁에 실질적인 제약이 발생하는지?

- (이해관계자)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협력인정업체로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해외직구 과정에서 별도의 이중인증 절차를 거쳐야하므로 이용 편의성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이해관계자) 통관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까지 협력인정업체 결격사유로 적용하는 것은 과도함

- (○○○ 위원) 통관은 고객의 주문·결제 등과 연결되는 절차이므로 통관과 직접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한정하여 결격사유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 위원) 관세청에서 요구하는 63개 거래정보 항목이 적법한 수입여부를 판단하는 데 실제 필요한 정보인지를 부처에 확인한 후 제출항목의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

○ (○○○ 위원)「개인정보보호법」경과규정를 요청하였는데, 협력인정업체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이후의 처분부터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이해관계자) 협력인정업체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해 줄 것을 요청

○ (○○○ 위원) 협력인정업체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중소업체의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 (이해관계자) 중소업체의 경우 거래정보 제출을 위해 시스템 연계(API) 등에 비용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2) 부처 의견 청취

○ (부처) 기존 통관제도는 일반적인 무역거래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개인 전자상거래 관리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제도 도입

- 해외직구 물품의 구매자 및 물품정보 확인을 위해 특송업체 등이 보유한 목록정보를 제출하여 개인 구매자에게는 일반적인 수입신고 절차를 생략하고 일정요건 하에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

- 주민등록번호 유출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통관 전용 식별번호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입하였으나, 장기간 운영 과정에서 부호의 도용·악용 사례 지속 발생

- 개인을 정확하게 식별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회용 인증번호를 활용한 이중인증 절차를 추진하게 됨

-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구매자의 본인확인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해외직구에 적용되는 수입신고 생략·면세 등 간소화된 통관 혜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음

-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상거래업체를 협력인정업체로 지정하여 구매자의 본인확인 편의성을 높이고, 관세청은 거래정보를 제공받아 저위험 물품은 신속하게 통관하고, 고위험 물품에 세관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협력인정업체 제도를 도입

○ (○○○ 위원) 협력인정업체로 등록하기 위해 기존에 제출하지 않던 거래정보를 제출하는 것은 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 (부처) 현재 해외직구의 경우 특송업체가 목록정보를 제출하면 구매자의 수입신고 의무를 생략하고 있으나, 목록정보만으로는 밀수 등 해외직구를 악용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

- (부처) 전자상거래업체가 보유한 거래정보를 제출받아 신고정보와 비교·검증할 경우 통관단계의 위험도를 낮추는 이점이 있으므로, 협력인정업체로 등록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통관관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거래정보를 제출하도록 할 필요

○ (○○○ 위원) 업체의 부담을 고려하여 거래정보 제출항목을 축소할 여지는 없는지?

- (부처) 업계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필수 제출항목을 정하였으며, 항목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해외직구의 거래 특성에 맞춰진 거래정보를 제출받기 위해서 판매사이트, 상품 카테고리 등 관련 정보가 추가되어 불가피하게 항목 수가 증가한 측면이 있음

○ (○○○ 위원) 거래정보 제출률이 95%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선택항목은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 것이 맞는지? 또한 제출률 95% 기준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 (부처) 선택항목을 제출할 경우 관세행정상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제출하지 않더라도 협력인정업체 등록 등에 불이익은 없음

- (부처) 필수항목은 원칙적으로 모두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나, 시스템 오류 등 제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을 고려하여 95%로 설정하였으며, 다만, 이해관계자가 95% 기준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측면이 있는 만큼, 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제출률 기준으로 90%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은 수용 가능

○ (○○○ 위원) 협력인정업체로 등록하기 어려운 중소업체들의 경우 운영상 애로가 생기는 것 아닌지?

- (부처) 거래정보를 제출하는 주체는 개별 판매자가 아니라 전자상거래 플랫폼(포털)이고, 중소판매업체는 대부분 대형 플랫폼에 입점하여 판매하는 형태이므로, 입점 중소업체에 거래정보 제출 의무 미부과

○ (○○○ 위원) 거래정보 제출을 위한 시스템 연계(API)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 (부처) 거래정보 제출을 위한 시스템 연계(API)에 과정에서 일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업체와의 테스트 과정에서 비용부담과 관련한 별도의 문제제기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

○ (○○○ 위원) 일회용 인증번호를 이메일이 아닌 문자메시지 등 이용자가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송할 수는 없는지?

- (부처)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 이메일 주소는 필수 입력정보이나 휴대전화번호는 필수정보가 아니어서 이메일을 기본적인 인증번호 전송수단으로 설정한 측면이 있음. 또한, 문자메시지를 통한 인증번호 발송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여 이를 정부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부처) 다만, 업체가 본인확인기관 등과 별도로 계약할 경우 문자메시지를 통해 인증번호를 발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두었음

○ (○○○ 위원) 이해관계자는 제도 시행일 이후 발생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한하여 결격사유를 적용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부처) 제도 시행 초기인 점과 기존 위반행위로 인해 업체가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협력인정업체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한 위법행위 부터 적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가능

○ (○○○ 위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협력인정업체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 아닌지?

- (부처) 고발 사실만으로 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로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방안 수용 가능

○ (○○○ 위원) 이중인증 제도 도입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제도 시행 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부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갱신하는 이용자부터 이중인증 절차가 단계적으로 적용되도록 설계하였으며, 브리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홍보하여 이용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3) 위원회 논의

○ (○○○ 위원) 거래정보 제출항목 중 선택항목은 제출 필요성이 크지 않은 측면이 있어 제외하는 방안 검토 필요

- (○○○ 위원)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선택항목을 우선 포함하되, 재검토 기한 2년을 설정하여 실제 활용도와 제출 필요성·적정성 등을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 (○○○ 위원) 거래정보 제출률 95% 기준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고, 부처도 이해관계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기준 완화에 동의한 만큼, 제출률 기준을 90%로 완화하는 것이 적정

○ (○○○ 위원) 업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결격사유의 적용시점은 처분일이 아닌 '위반행위 발생일'을 기준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정

○ (○○○ 위원) 이중인증 및 협력인정업체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만큼,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혼란 방지를 위해 구매자와 전자상거래업자를 대상으로 제도의 주요내용 등을 적극 홍보할 필요

- (○○○ 위원) 구매자의 인증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간편한 이중인증 방법을 다양하게 강구할 필요

□ 심의 결과 : 원안동의 · 개선권고 · 부대권고

① 이중인증 도입의 필요성 및 적정성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중인증 도입을 통해 사전적으로 피해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함께 도입되는 **협력인정업체의 통관상 특례**를 통해 **구매자의 규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중인증 제도는 도입하되,**

② 거래정보 제출수준의 적정성

- **필수 제출항목**은 **통관관리에 필요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선택항목**은 **미제출**하더라도 업체에 **별도의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동 고시 개정안에 대해 **원안동의**

- 시스템 오류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전자상거래업자가 **지속적으로 준수 가능한 수준**의 **거래정보 제출률**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 바, **제출률 기준을 일부 완화할 것**을 **개선권고**

③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의 적정성

- **개보법 위반 여부**를 등록요건으로 규정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고발 조치**만으로 결격사유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는 바, **과징금 부과 처분** 또는 **벌금형 이상이 선고**된 경우에 한해 **결격사유를 적용**할 것을 **개선권고**

- **제도의 안정적 정착, 전자상거래업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구매자 편의 보장**을 위해 **동 등록요건의 적용시기를 '위반행위 발생일'을 기준으로 적용례를 마련**할 것을 **개선권고**

④ 제도 시행관련 홍보 강화

- **이중인증** 및 **협력인정업체** 제도의 **원활한 정착·시행**을 위해 **구매자 및 전자상거래업자**를 대상으로 제도의 주요내용 등을 **적극 홍보**하고, 보다 간편한 이중인증 방법을 강구할 것을 **부대권고**

⑤ 재검토기한

- 운영성과 및 사업자 부담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어, **재검토 기한을 2년으로 설정**할 것을 **개선권고**